LUCEEN
대명루첸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 46692(2015.11.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청약 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주택공급지역을 울산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1. 06.)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가 존재하는 층은 필로티를 제외한 층 중 최저층을 말함)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택법」제96조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제38조에 의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0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2,622.3000㎡ (공동주택 : 30,876.2087 ㎡, 근린생활시설 : 1,746.0913㎡)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9개동 총 817세대 [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8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주거전용+주거공용)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저층배정 세대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15001363–01	73.0200A	73.0200	26.2694	99.2894	43.5326	142.8220	37.7815	629	62	62	62	18	425	25
	2015001363–02	73.1100B	73.1100	26.1044	99.2144	43.5898	142.8042	37.8279	188	18	18	18	5	129	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동호별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15.12.10.	16.02.10.	16.05.10.	16.08.10.	17.02.10.	17.05.10.	17.08.10.	입주지정일
73A	102동 1호 103동 1호,2호	2	3	187,986,294	162,013,706	350,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70,000,000
		3	3	196,986,294	162,013,706	359,0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71,800,000
		4	3	203,986,294	162,013,706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73,200,000
		5~9	15	209,986,294	162,013,706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74,400,000
		10~19	30	213,986,294	162,013,706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75,200,000
		20~29	10	215,986,294	162,013,706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75,600,000
	101동 3호,5호 102동 5호 107동 2호 108동 3호,5호,6호 109동 2호	2	8	189,986,294	162,013,706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70,400,000
		3	8	198,986,294	162,013,706	361,0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72,200,000
		4	8	205,986,294	162,013,706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73,600,000
		5~9	40	211,986,294	162,013,706	374,0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74,800,000
		10~19	80	214,986,294	162,013,706	377,0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75,400,000
		20~29	69	217,986,294	162,013,706	380,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76,000,000
	101동 1호 102동 2호 104동 1호 105동 1호 108동 1호	2	4	189,986,294	162,013,706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70,400,000
		3	4	199,986,294	162,013,706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72,400,000
		4	5	206,986,294	162,013,706	369,0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73,800,000
		5~9	25	211,986,294	162,013,706	374,0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74,800,000
		10~19	50	215,986,294	162,013,706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75,600,000
		20~29	36	218,986,294	162,013,706	381,0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76,200,000
	107동 1호 109동 1호	2	2	191,986,294	162,013,706	354,0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70,800,000
		3	2	200,986,294	162,013,706	363,0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72,600,000
		4	2	208,986,294	162,013,706	371,0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74,200,000
		5~9	10	213,986,294	162,013,706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75,200,000
		10~19	20	217,986,294	162,013,706	380,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76,000,000
		20~29	19	220,986,294	162,013,706	383,0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76,600,000
	103동 5호 104동 3호 105동 3호,5호,6호 106동 1호,2호	2	7	193,986,294	162,013,706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71,200,000
		3	7	203,986,294	162,013,706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73,200,000
		4	7	210,986,294	162,013,706	373,0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74,600,000
		5~9	35	215,986,294	162,013,706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75,600,000
		10~19	70	219,986,294	162,013,706	382,0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76,400,000
		20~29	47	222,986,294	162,013,706	385,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77,000,000
73B	101동 6호	2	1	180,006,486	161,993,514	342,0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68,400,000
		3	1	189,006,486	161,993,514	351,0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70,200,000
		4	1	197,006,486	161,993,514	359,0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71,800,000
		5~9	5	202,006,486	161,993,514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72,800,000
		10~19	10	206,006,486	161,993,514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73,600,000
		20~29	6	208,006,486	161,993,514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74,000,000
	101동 2호 102동 3호 108동 2호	2	3	184,006,486	161,993,514	346,0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69,200,000
		3	3	193,006,486	161,993,514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71,000,000
		4	3	200,006,486	161,993,514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72,400,000
		5~9	15	206,006,486	161,993,514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73,600,000
		10~19	30	210,006,486	161,993,514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74,400,000
		20~29	29	212,006,486	161,993,514	374,0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74,800,000
	103동 3호 104동 2호 105동 2호	2	3	186,006,486	161,993,514	348,0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69,600,000
		3	3	196,006,486	161,993,514	358,0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71,600,000
		4	3	203,006,486	161,993,514	365,0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73,000,000
		5~9	15	208,006,486	161,993,514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74,000,000
		10~19	30	212,006,486	161,993,514	374,0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74,800,000
		20~29	27	215,006,486	161,993,514	377,0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75,400,000

※ 전체 동, 호는 단지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한 필로티 시공으로 1층의 공급세대가 없습니다.

■ 공통유의사항

1.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주택 임 2.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임
3.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4.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5.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6.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7.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정산은 없음
8.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필로티는 한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동호수를 산정)
9.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10.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11.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12.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13.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14.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는 신뢰할 수 있음
15.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세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함
16.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17.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장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1. 접수 및 당첨자 선정 일시, 장소

구 분		일 자	시 간	접수 및 발표장소
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일시	2015. 11. 11.	10:30~15:00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견본주택 (052–256–3799)
	당첨자 선정	2015. 11. 11.	17:00	

※ 추첨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으로 선정함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① 계약 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②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불가,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이중 당첨 등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를 제외], 제6항, 제7항에 의해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은 입주자저축 요건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신청 전까지 주택규모 선택필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주택형	73A	73B	소계
일반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62	18	8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2	18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62	18	8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	5	23
소 계	204	59	26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2015년 2월27일) 개정사항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3. 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①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1. 0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국가유공자등)을 받으신분(단, 특별공급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자는 제외).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②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80세대
③ 해당기관에서 인정서류를 발급받은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함.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①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1. 0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②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80세대
③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④ 과거 3자녀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 불가
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⑦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 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⑧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3세대는 직계비속으로 구성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지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①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1. 0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자녀를 입양하신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자로 관리됨
㉯ 출산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추후 지정기한 내 출산관련 자료(출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 · 낙태 시 관련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②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80세대
③ 선정방법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자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자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산정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자녀수로 인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기준

구 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x N–5]. N = 6인이상 가구원수.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① 대상자 :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자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총 23세대
③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가점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식에 의함

7.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일반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세대주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접수 후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계약 시 구비)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장애우, 철거민, 국가 유공자 등)는 제외함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은 해당지자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보훈청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본인 신분증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해당은행 및 www.apt2you.com(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단,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징구)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임신 중인 자, 접수장소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접수장소 비치) • 건강(의료)보험증(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의료)보험증 추가 제출) • 소득입증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당해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구 분	구 비 서 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기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접수 후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계약 시 구비)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 다자녀특별공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해당은행 및 www.apt2you.com(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피부양자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 피부양자초본 1통(주민등록등본상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주민등록등본표 등재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 제출) • 노부모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무주택기간을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 경우)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위임장(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1. 공통사항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11. 0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자 포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②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타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타지역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사업장 해당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을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 가능)
④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⑤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입주자 저축의 통장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⑥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⑦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제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⑨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2.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85㎡ 이하 주택형만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 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순위	전주택형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3. 순위별 접수일정

청약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시간	당첨자 발표
1순위	2015. 11. 12.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시중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접수시간 평일 08:00~17:30	• 일시 : 2015. 11. 19.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APT2you(www.apt2you.com)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 전화안내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5. 11. 13.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 www.apt2you.com • 접수시간 평일 08:00~17:3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1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 가능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 ~ 16:00. 단,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 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1. 청약 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부적격자 처리
1. 청약부적격자(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정하여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2. 청약자의 이중당첨
① 동일계좌로 2주택이상 청약한 경우 모집공고상의 당첨자 발표일자가 가장 빠른 주택을 당첨주택으로 하고, 후 당첨 주택은 당첨을 취소함. 다만, 예비당첨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두 공급주택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울산광역시 (기타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85㎡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02㎡이하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135㎡이하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그 외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2.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3.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4. 가점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5.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만점 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함)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③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④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①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②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②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단 정규계약종료일까지 소명과 관련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됨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인정 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구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청약신청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신 분 – 2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APT2you(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방법
1. 공통 : 층별 · 동별 ·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4. 85㎡이하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85㎡초과 주택형은 100% 추첨제를 통해 공급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2순위자 – 주택청약 참가 은행)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서류 제출해야 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이중 당첨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서상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금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청약 시	청약지역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해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대상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부터 [2015. 11. 19. (목) 이후]	자동이체	–	• 본인이 2순위 청약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됨
창구 청약신청자 (자동환불미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부터 [2015. 11. 19. (목) 이후] 평일09:00~16:00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 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 구비서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단,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창구 청약신청자 (자동환불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부터 [2015. 11. 19. (목) 이후]	자동이체	–	• 자동환불 신청계좌(접수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요구불계좌에 한함)로 자동 환불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구 비 사 항
특별공급	•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은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인터넷 ·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이용기간		(2015. 11. 19 (목)). ~ (2015. 11. 28 (토)) (10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번호 : 9→1→3)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 11. 19 (목))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의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1.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15. 11. 26.(목)까지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2.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3.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체결일시 : 2015. 11. 24.(화) ~ 2015. 11. 26.(목) (3일간, 시간 : 10:00~16:00)
2. 계약체결장소 :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견본주택(주소 : 울산 남구 달동 1251–4번지) / 연락처 052–256–3799)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행명	계좌구분	납부계좌	예금주
우리은행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5–802–842390	(주)하우스팬

1.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2. 무통장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함
3.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 계약금(울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무통장 입금 영수증 • 청약당첨자 거주지역 및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계약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자 및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 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 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1.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2.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5.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6.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7.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8.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중복 계약체결 가능함
10.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1.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을 득한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2.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함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수준
일괄 선택 (개별 선택 불가)	바닥	각실,거실,주방,현관, 발코니	온돌마루/PVC륨/타일/걸레받이/현관바닥재 및 디딤판/현관마루귀틀/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포함)/발코니 바닥 배수구	바닥난방배관+시멘트몰탈 포함(난방배관부위)
	벽	각실,거실,주방,현관, 발코니	초배지/벽지/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도장, 하지판)/경량벽체/걸레받이/발코니수전류/발코니벽도장	시멘트 벽돌/단열재/석고보드/발코니난간
	천장	각실,거실,주방,현관, 발코니	초배지/천장지/반자돌림/단천장 인테리어마감/단천장/몰딩 및 MDF판/발코니 천장 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커텐박스
	조명기구	각실,거실,주방,현관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전기배선/전기콘센트/전기스위치/매입박스
	욕실	공용, 부부욕실	욕실 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대리석/천장재/샤워부스/욕실휀/비데/욕실장/욕실거울/욕조/세면대/양변기/수전류/액세서리/환풍기/재료분리대/욕조하부틀/코킹/바닥배수구/배수트렌치/욕실폰/tm위치/콘센트	방수/조적/설비배관/전기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	주방가구/주방액세서리/주방가전류/벽마감/쿡탑/수전류/렌지후드/빌트인가전제품	소방관련시설/주방배기덕트/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일반가구	현관, 거실, 복도 및 침실	신발장/드레스장/화장대/반침장(붙방이시스템장)/가구도어/발코니시스템선반/실외기실도어	
	문	각실 출입문	목문상부마감판 및 수납장/문선/목재문틀(본틀) 및 목재 문짝/각종 하드웨어 일체	목재문틀(가틀)/욕실문하브씰/세대현관문틀 및 문짝/방화문틀 및 문짝/PL창호/디지털 도어락
	기타사항	각실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각실 온도조절기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73.0200A	73.1100B
금액(원)	23,080,000	23,19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①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②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 불가능함
③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 불가함
④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⑤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별도 안내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⑥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⑦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⑧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⑨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500만원) 이상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 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⑩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⑪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⑫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 문(PVC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강화마루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⑬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⑭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⑮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
1.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부가세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확장금액			
		세대당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7년 2월10일)	잔금(입주시)
73.0200A	거실,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주방	11,000,000원	1,100,000	4,400,000	5,500,000
73.1100B	거실,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주방	11,000,000원	1,100,000	4,400,000	5,500,000

3.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은행명	계좌구분	납부계좌	예금주
우리은행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1005–702–842412	(주)하우스팬

4.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①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는 결정하셔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함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③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중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④ 발코니 확장은 실별 ·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⑤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⑥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⑦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⑧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⑨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⑩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⑪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단열재 설치 등의 관련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⑫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⑬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⑭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하여 준공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융자지원
1.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중도상환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한도 상이 및 대출 불가시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2.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3.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4.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5. 타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도금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1.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 2.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18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비상급수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 계약 및 입주 유의사항
•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해약 조치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 함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하는 오차범위 밖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한 기준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하며, 오차범위 내의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공급 계약서 제3조 5항을 준용키로 하며, 법적 허용범위 내의 레벨 변경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표시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 약1개월 전에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정확한 사전방문 일정은 추후 통보 또는 공고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단지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 층별, 호수별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 공간과 필로티,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은 다수의 입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본 부대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구획 및 면적은 향후 내부 레이아웃의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운영에 따른 기기 및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당해 시설물은 입주민들의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계획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인허가 도서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임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거래불량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함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주민등록등본 포함) 시행자에게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적용되오니,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에서 사전 확인 바람 • 추후 입주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등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와 생산여건 등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평형 외 시공되어지는 평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73A타입의 경우 침실2와 거실 사이, 73B타입의 경우 침실2와 침실3 사이의 벽체는 비내력벽의 가변형 벽체이나 본공사에서 선택/시공하는 타입은 아니며, 입주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외부 창호(유리포함)는 추후 동등이상의 제품 중에서 시공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 네트워크는 추후 동등이상의 제품 중에서 시공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가전은 추후 동등이상의 제품 중에서 시공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생기구는 추후 동등이상의 제품 중에서 시공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은 추후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샤시는 층수 및 향에 의한 풍압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견본주택 제시형태와 다르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 시에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무늬재, 천연석재 등은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건물의 색채 및 세부사항(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 포함)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내부 가구(신발장, 주방장, 씽크장,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벽면, 바닥, 천장 등)이 없음
• 화장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을 붙이지 않고 몰탈 마감함 • 천연대리석 및 화강석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물무늬, 이색, 크랙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동 내의 인접세대의 발코니확장 여부로 발코니 천정마감이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인터넷 홈페이지)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회사 사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 없이 임의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시스템 설치품목은 본 제작물의 제작 이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계약(설치사항, 규격), 전시품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 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상부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전열교환기가 다용도실 천장에 별도의 천장 마감이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전열교환기 가동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과 세대통합 통신단자함,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와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단위세대의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되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내에 도시가스용 가스정압기 시설이 설치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는 스팀청소기,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기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뒤틀림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세대내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및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외벽색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시공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함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 및 창호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작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작물의 면적수치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거공용 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한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실내 벽체 또는 천정부위에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당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로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상,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균열 중 0.3㎜ 초과 구조균열만을 하자로 인정하며, 이 경우 보수방법은 균열보수+균열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으로 함 • 동일 동 내의 인접세대의 발코니확장 여부로 인하여 발코니 세대 경계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 유무를 선택할 수는 없음
•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및 농작물경작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샤시,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 최상층, 세대측벽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면차별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면, 아파트 측벽 문양 등의 디자인, 문양위치변경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면차별화에 따른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 · 후면발코니 등에 외부장식물 또는 몰딩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벽의 색채계획은 "울산광역시도시경관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이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마을명칭 및 동 · 호수는 울산광역시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함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소음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차량조명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전면 가로등 야간 점등으로 인한 불빛의 산란에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식재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1층 전용정원은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일부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양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와 운동시설 3개소로 인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육시설은 104동, 105동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동에서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기계/전기실 등은 103동 하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동/세대에는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설치되는 채광창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및 소음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광창에 올라가는 행위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등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된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및 엘리베이터 홀 사이에 설치된 전실은 공용면적에 포함된 부분으로 외부단열재가 미설치됨
• 단지 배치상 기계 · 전기실 및 주차장 급 · 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음
• 지하주차장 동선 및 기능의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의 바닥은 단지 레벨차에 의한 경사로 및 바닥페인트가 형성되어 있음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운전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각 세대 발코니에는 발코니 선홈통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선반)의 배치가 변경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장 후면 및 싱크대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아니함
• 씽크대 상부장 후면, 침실 붙박이장 후면, 신발장 후면 등에는 천정몰딩 및 마감(도배)이 시공되지 아니함 • 씽크대 하부 및 침실 붙박이장 하부는 마감이 시공되지 아니함 •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설비(밴츄레이터)에 의하여 바람소리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및 화장실에 설치되는 환풍기 등이 외부 기압(바람)차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 차량 진출입구, 비상차로, 보행자 출입구, 단지 내 상가, 부대 복리시설 등에 인접한 동은 차량, 보행자 및 학생 등에 의하여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차량전조등 및 야간조명 효과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식재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1층 전용정원은 설치되지 않음)
• 입주 시 강풍으로 사다리차 이용 시 이삿짐 추락 및 사다리차 전복의 사고가 우려되므로 입주자는 엘리베이터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사용으로 발생되는 사고(이삿짐 추락, 사다리차 전복, 조경시설(조경수, 보도블록 등))은 모두 입주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보상 또한 책임져야 함
• 단지 내 주민 동선의 편의를 위하여 전동 1층이 필로티구조로 건축되며, 필로티 공간은 보행 및 차량통로로 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필로티 주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동배치로 인접세대 위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건축법」및「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이 감소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함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구성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 과정 등에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북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접한 동에서는 이용자들과 상가 주차통행에 따른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차구획은 되어 있으나 출입구 및 도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도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에 상가 지상주차장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의 동측, 서측, 남측, 북측 4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통행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임대주택법」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함

■ 인접 기반시설
• 당 사업지 인접 도시기반시설(소공원, 주차장, 단지 외곽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은 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시설로 입주민 외에 일반인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임
• 주변도로의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변단지의 신축 또는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도로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변압기, 전동기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최소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현관에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지식경제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기기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1.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	245,369,600,000	01282015–101–0019400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① 보증사고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사업주체 : (주)하우스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주택2004–0341)
시공업체 : (주)대명종합건설 (법인등록번호 : 110111–0833130) / (주)대명수안 (법인등록번호 : 110111–080551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세별도)

구분	건 축	소방, 통신	전 기
감리회사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수연엔지니어링	(주)한국나이스기술단
감리금액	1,137,989,000	118,818,183	480,254,000

■ 견본주택 위치 : 울산 남구 달동 1251–4번지 (연락처 : 052–256–3799) ■ 홈페이지 : http://landmark.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UCEEN
대명루첸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문의 052) 256–3799

시행 : (주)하우스팬 시공 : (주)대명종합건설 | (주)대명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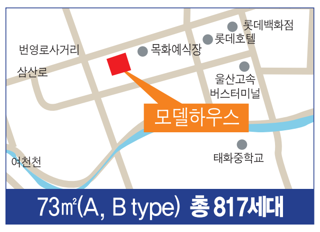

73㎡(A, B type) 총 817세대